

의안번호	제 721 호
의결연월일	2025. 12. 2. (제310회 제2차 정례회)

##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서산시장
제출연월일	2025. 11. 14.

#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721 호
----------	---------

제출연월일 : 2025. 11. 1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업무 관련 개선 필요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코자 함

- 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억제를 위하여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변경하고 토석채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함)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원활한 운영 도모
-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25.7.1.)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의 건축물 입지기준 및 건폐율 관련 위임사항을 반영, 농공단지의 건폐율 완화 범위 및 기준 신설,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건축물 입지 관련 별표 변경 내용 반영

## 2. 주요내용

- 가. 토지분할 허가기준 개정(안 제20조의2)
-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 다. 개발행위(토석채취)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완화(안 제22조)

- 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25.7.1.)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의 건축물 허용기준 신설(안 제25조제22호의2, 별표 22의2)
- 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25.7.1.)에 따라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범위 및 기준 신설(안 제34조)
-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및 별표 23 개정(2025.7.1.) 내용과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필요한 내용 반영(안 별표 16, 별표 19, 별표 22)

### 3. 단계별 추진사항

- 가. 입법계획 결재 : 2025. 8. 18.
- 나. 성별영향평가 : 2025. 8. 19.
- 다. 입법예고 : 2025. 8. 18. ~ 9. 15.
- 라. 법제심사 : 2025. 9. 23.
- 마. 조례·규칙심의회 : 2025. 10. 20.
- 바. 시의회 의결 : 2025. 12월 중
- 사. 공포·시행 : 2025. 12월 중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라.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

##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않거” 를 “않았거” 로, “토지를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를 “토지의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
3.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 (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 면적 변경
2. 구역의 변경 없이 면적 산정 착오를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역·지구·구역 등이 결정·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방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의 변경인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역·지구·구역 등이 결정·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입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2조제2호 중 “3만”을 “5만”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을 “영 제78조제1항, 제2항”으로,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제34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

하로 한다.

별표 16 제5호 나목 및 별표 22 제5호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
- (5) 지방자치단체

별표 19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호의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단,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로 한다.

별표 16, 별표 19,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개정 2020.9.25.>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6호 관련)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 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다. <생략>

6. ~ 13. <생략>

[별표 19] <개정 2020.9.2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9호 관련)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단,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1. <생략>

[별표 22] <개정 2020.9.25.>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22호 관련)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을 건축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  
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  
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6. ~ 15. <생략>

[별표 22의2]

##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22호의2 관련)

보호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의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의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
    - (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 허가 등을 받지 <u>않거나</u> 기반시설 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u>토지를 택 지식(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 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 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 니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 (생 략)</p>	<p>제20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 ----- ----- <u>않았거</u>----- ----- <u>토지의 분할에 대한</u> <u>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 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 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u></p> <p>2. <u>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u></p> <p>3. <u>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 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 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 면적 변경
2. 구역의 변경 없이 면적 산정 착

<신 설>

<신 설>

오를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역·지구·구역 등이 결정·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방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의 변경인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역·지구·구역 등이 결정·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입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2. (생략)

<신설>

23. ~ 24. (생략)

제3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1. (현행과 같음)
2. ----- 5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78조제1항, 제2항 및 영 부칙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

1. ~ 22. (현행과 같음)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23. ~ 24. (현행과 같음)

제3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같음)

## 《 참고사항 》

### 가.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7. 24., 2021. 1. 12.>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1. 7. 6.]

###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7. 1.>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7. 1.>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1. 18., 2025. 7. 1.>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본조신설 2021. 7. 6.]

###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제70조의13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④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목적

2.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

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본조신설 2021. 7. 6.]

###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6.]

###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7. 4. 19., 2008. 1. 8., 2010. 4. 29.,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2. 10. 29., 2014. 3. 24., 2016. 5. 17., 2016. 6. 30., 2016. 8. 11., 2017. 12. 29., 2019. 8. 6., 2022. 1. 18., 2023. 3. 21., 2025. 7. 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

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 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 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의 면적을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여러 차례에 걸쳐 확장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 2. 부피 5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 3. 삭제 <2008. 1. 8.>

##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25. 7. 1.>

③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 7. 1.>

[시행일: 2025. 10. 2.] 제78조제2항, 제78조제3항

##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9. 12. 31.>

1. ~ 21.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2. 11.>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09. 8. 5., 2010. 10. 1., 2011. 3. 9., 2011. 11.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2024. 5. 28., 2025. 7.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생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라. 토지분할	<p>(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p> <p>(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p> <p>(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다른 토지와 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p> <p style="margin-left: 20px;">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p> <p style="margin-left: 20px;">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p> <p>(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p> <p>(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모지의 분할</p> <p>(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p> <p>(라) &lt;삭제&gt;</p> <p>(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p>

	<p>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p> <p>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p> <p>(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p>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25. 7. 1.>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

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된

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차. (생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 및 차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25. 7. 1.>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 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 (마) 지방자치단체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2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참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용 창고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식물과 관련된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
- 마) 지방자치단체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6호 관련)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 지역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9] <개정 2020.9.25.>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19호 관련)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부대시설로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제25조제22호 관련)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가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4. 작 성 자 : 건설교통국 도시과장 김 범 수

##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 서 산 시



수신 도시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도시과-16152(2025. 8. 1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족지원과장 구

주우관	<b>포양미</b>	여성정책팀장	<b>이선희</b>	가족지원과장	<b>심은주</b>	2025. 8. 19.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27334	(2025. 8. 19.)		접수	도시과-16233	(2025. 8. 19.)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로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 <a href="https://www.seosan.go.kr">https://www.seosan.go.kr</a>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a href="mailto:popoya97@korea.kr">popoya97@korea.kr</a>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 라.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

###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사세부내용	심결사과
선행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정
	소비자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내용	필요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 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정
	적법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정
	타당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정
입법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정
부칙규정	작성형식	제·개정 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정
	시행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기타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자원문제 고려 여부	적정
종합검토의견		- 관련 상위법 개정 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5. 9. 23.(제1275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 마.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통보서

도약하는 서산, 싹트는 서산



# 서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43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제438회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집행부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심의일시 : 2025. 10. 20.(월)
2. 심의안건 : 총 11건(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7, 수정가결3, 보류 1

의안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93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치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94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5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6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97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98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99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0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1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0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3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붙임 제43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각 1부(제93호~제102호), 끝.